연구논문

'남녀평등도시(마을)만들기' 정책방안 연구ⁿ

김 엘 림 (선임연구위원)

〈목 차〉

- I. 서 콘
- II. 외국의 관련사례
- Ⅲ, 우리나라의 '남녀평등도시(마음)만들기' 정책방안

1. 서 론

A. 연구의 배경과 목적

1990년대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남녀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를 남녀평등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활동이 남녀평등을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주요방안의 하나 로서 주목받고 있다. 일본도 199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계획수립단계에서 부터 남녀주민이 참여하여 지역사회를 남녀평등과 인권이 존중되는 '남녀공동참획1)도시'(男女共同參劃都市)로 만 드는 사업을 21세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발전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 연맹(IULA: International Union of Local Authorities)은 1998년 11월에 「지방자치단체 세계여 성선언문」(IULA Worldwide Declaration on Women in Local Government)가을 채택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의 생활에 가장 가까운 정부조직으로서 행정서비스 제공자, 생활환경조성자, 고용주로서 역할을 하므로 남녀평둥실현과 민주화, 여성인력활용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수립, 시행과정에 여성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의 철폐와 여성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의 보장을 통해 여성인권을 구현하여 남녀가 평둥하고 상호존중하며 살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민주화와 발전에 필수적인 요건이 됨을 강조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10년밖에 안되는 데다가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 책추진체제나 환경은 아직 취약한 실정에 있으며 중앙부처와의 정책연계도 미흡한 실정에 있다. 또한 전통적 성별역할분업의식과 남성중심적인 사회구조로 인하여 현재 249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여성이 한명(0.4%)밖에 없고, 4,180명의 지방자치단체 전체 의회 의원중 여성은 97명 (2.3%)밖에 되지 않으며, 5급이상의 여성공무원은 전체의 4.7%(578명)에 불과할 정도로 여성의 정책결정참여도나 사회참여도가 낮다. 그리하여 남녀평등에 관한 관심이나 실현의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거나 지방자치단체 정책전반이나 주민의 생활속에 정착하지 못하여 왔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2001년 1월 29일에 여성정책전담 중앙행정부처로서 여성부가 출범하여 여성정책의 목표를 "남녀평등한 민주인권복지국가의 건설"로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는 2001년 3월 20일에 아시아 지방자치단체 중 두번째로 「지방자치단체 세계여성선언문」에 서명하였다. 특히 행정자치부 여성정책담당관실은 지방자체단체를 남녀평등한 지역사회로 만드는 사업계획의 추진을위해 전국 시·도 여성정책담당 남녀공무원들과 본 연구자로 구성된 남녀평등도시사례 해외연수단(총 15인)을 조직하였고 아울러 본원에 남녀평등도시 모델개발에 관한 연구를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외국의 관련사례를 참조하여 행정자치부 여성정책담당관실·여성부등의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남녀주민과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생활문화와 의식, 환경, 행정체제를 남녀평등하게 변화시켜 지역사회를 '남녀평등도시(마을)'로 만드는 정책방안을 개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일본이 참가 또는 참여라는 용어 대신에 '참획'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정책계획에서 부터의 남녀의 대 등한 참여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²⁾ 서울특별시(2000), 「서울여성백서 2000L, pp.261~264.

B. 연구의 방법

이 연구는 문헌연구와 함께 일본의 4개 '남녀공동참획선언도시'이와 미국의 '여성들이 살기 좋은 도시'이와 '여성친화적 정책실시 도시'이의 시찰(기간 : 5.16~26)을 통한 외국사례연구와 워크숍개최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행정학자들과 여성정책 담당공무원들이의 의견을 참조하여 단기과제로 수행되었다.

[]. 외국의 관련사례

A. 일본정부의 '남녀공동참훡선언도시 장려사업'

1. 사업의 추진배경

일본 정부는 2000년을 5년 앞둔 1994년에 21세기 일본사회를 풍요롭고 활력있는 사회로 발전시키는 최우선과제의 하나로서 "여성과 남성이 모든 부문의 정책계획에서부터 대통하게 참여하여 서로 그 인권을 존중하고 기쁨도 책임도 서로 나누면서,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취할 수 있는 '남녀공동참획사회'(男女共同參劃社會)의 형성"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관련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리부(2001년부터 내각부) 산하에 총리를 본부 장으로 하고 내각관방장관을 부본부장으로, 모든 각료를 본부원으로 하는 남녀공동참획추진본부 를 설치하였으며, 그 실무부서로서 총리부에 남녀공동참획실(2001년부터 내각부의 남녀공동참획 국)을 설치하였다. 1997년에는 내각관방장관을 남녀공동참획에 관한 정책의 종합·조정을 담당하 는 남녀공동참획담당장관으로 임명하였다. 또한 관계행정기관 상호간의 연계를 위해 남녀공동참

³⁾ 오사카부의 사카이시(堺市), 시즈오까현의 오오스카죠(大須賀町), 동경도의 하무라시(羽村市), 동경도의 스 기나무구(杉並區)

⁴⁾ 캘리포니아의 얼바인시(Irvine)

⁵⁾ LA시와 여성지위위원회(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⁶⁾ 행정자치부 여성정책담당관실 및 남녀평등도시사례 해외연수단의 공무원들, 광역시·도 여성정책담당 과 장급 공무원들, 여성부 정책총괄과 공무원

확담당관회의를 설치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마다 남녀공 동참확담당부서를 설치하고 남녀공동참획추진지역회의를 개최하였다. 또한 NGO 및 각계각충과 의 연계를 위해 내각관방장관을 의장으로 하여 각료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기본적이고 종합 적인 관련정책 및 중요사항의 조사심의를 행하는 남녀공동참획심의회기와 역성단체, 미디어, 경제 계, 교육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남녀공동참획추진연계회의체'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21세기 국가, 지방공공단체 및 국민의 남녀공동참획사회 형성에 관한 노력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고자, 1999년 6월 23일에 '남녀공동참획사회기본법」이 공포, 시행되었다. 이 법은 '남녀공동참획사회'를 "남녀가 사회의 대통한 구성원으로서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 사회의 모든 분야에 참획하는 기회가 확보되고 남녀가 균통하게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이념을 향유할 수 있고 또한 함께 책임을 지는 사회"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① 남녀가 성별에따라 차별대우를 받지 않고 인권을 존중받는 것 ② 전통적인 성별 역할분업관을 개선하여 사회의 제도나 관행이 남녀의 사회활동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가능한 한 중립적이 되도록 하는 것③ 정책 또는 민간단체의 입안 및 결정에 있어서 남녀가 평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참여하는 것④ 가족구성원인 남녀가 육아, 가족간호 등의 가정생활과 사회활동을 양립하도록 지원하는 것⑤ 남녀평등실현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남녀공동참획사회의 기본요소로 규정하였다. 그 실현을 위해이 법은 정부에게 적극적 조치를 포함하는 남녀공동참획기본계획의 책정, 범제상 및 재정상의 조치, 의회에의 연차보고서 제출, 국민이해의 촉진, 국제적 협력의 연계조치, 지방공공단체 및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의 책무를 부과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게는 남녀공동참획사회 형성에 관한 정부의 정책에 따른 시책 기타 지역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책정하여 실시할 책무를 부과하였다.

이 법에 근거하여 남녀공동참획추진본부는 2000년 12월에 새로운 「남녀공동참획기본계획」 8)을 수립하여 ① 정책・방침결정과정에의 여성참여 확대 ② 남녀공동참획시각에 입각한 사회제도 ·관행의 검토, 의식개혁 ③ 고용분야에서의 남녀균등한 기회와 대우 확보 ④ 농어촌에서의 남녀공동참획의 확립 ⑤ 남녀의 직업생활과 가정 ·지역생활의 양립의 지원 ⑥ 고령자 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환경의 정비 ①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의 근절 ⑧ 생애를 통한 여성의 건강지원 ⑨ 미디어에서의 여성인권의 존중 ⑩ 남녀공동참획의 추진에 의해 다양한 선택을 가능하게하는 교육·학습의 강화 ⑪ 국제사회의 「평등・발전・평화」에의 공헌 등의 11개의 정책과제와

⁷⁾ 심의회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 중에 총리가 임명하는 비상근 위원 25인 이내로 조직하고, 남녀 어느 일방 위원 총수의 10분의 4 미만이어서는 안되도록 되어 있다.

⁸⁾ 이 계획은 1996년 12월 13일 수립된 「남녀공동참획사회형성을 위한 2000년도까지의 국내행동계획고의 시행성과와 경험을 기초로 한 것이며, 시책의 기본방향은 2010년까지 지속되며 구체적 시책은 2001년부터 시행기간으로 하였다(日本總理府縣(2000), 「平畝 12年版 男女共同參劃白書」, pp.266~267.

주요시행과제를 설정하였다.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남녀공동참쵝선언도시장려사업'은 내각부와 남녀공동참쵝추진본부가 주관이 되어 남녀공동참 획사회형성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고 남녀공동참획사회형성의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행정을 행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으로 하여금 주민과 협력하여 지역사회를 「남녀공동참획도시」로 만들겠다는 선언을 하게 하고 그 실현을 위 해 노력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말한다.

남녀공동참획추진본부는 '남녀공동참획선언도시장려사업'의 실시요강을 마련하고, 남녀공동참 획선언도시의 홍보와 남녀공동참획 추진사업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전 국남녀공동참획선언도시의 관계자 회의를 매년 개최하여 중앙정부와 각 선언도시와의 연계·교 류를 깊게 하고 전국 차원의 남녀공동참획의식의 고양을 도모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가 남녀공동참획선언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남녀공동참획선언도시 장려사업 실시 요강에 의해 다음의 기본요건을 갖추고 남녀공동참획선언도시의 선포를 신청하면, 도도부현(광역 자치단체)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내각부에서 승인하고 있다. 선언은 거의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며 심의와 선정은 통과절차와 유사하다.

- (1) 기초자치단체장의 남녀공동참획선언도시 추진의지의 표명과 의회의 의결, 남녀공동참획헌 장의 제정 등의 방법에 의해 남녀공동참획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분명한 의지의 선포
- (2) 정부위원회 등에서의 여성위원의 등용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 남녀공동참획추진계획의 시행계획의 수립, 남녀공동참획에 관한 남녀공무원 연수와 담당부서의 설치 등에 의한 남녀공동 참획추진을 위한 행정체제의 마련
- (3) 남녀공동참획사회 형성에 관한 주민의 이해와 협력, 참여를 축구하기 위한 심포지엄, 강좌, 표창 등 홍보·계발사업

⁹⁾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도·도·부·현·시·정·촌(都·道·府·縣·市·町·村)으로 구성된다. 광역자 치단체인 도도부현은 총47개로 동경도 1개, 북해도 1개, 오오사키부와 교오토부의 2개 부, 43개 현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초단체인 시정촌은 3,242개 있다. 여기서 기초자치단체는 정령에 의해 지정된 도시(政 제외한 시·정·촌(市·町·村)및 특별구를 말한다.

3. 사업의 시행실태와 효과

이 사업이 개시된 1994년부터 2002년 5월말까지 60개의 기초자치단체가 남녀공동참획선언도 시가 되었다. 연도별 신규남녀공동참획선언도시수는 1994년에 3개, 1995년에 3개, 1996년에 3개, 1997년에 4개에 불과 하다가, 1998년에 11개로 늘어 났으며, 1999년에 6개, 2000년에 7개, 2001년에 8개였다가 2002년에 와서는 5개월만에 14개로 늘어났다. 그런데 일본의 기초자치단체가 약 3,200억개인 점을 감안하면 그 비율은 약 1.9%밖에 되지 않는다. 그 주요이유는 아직 남녀공동참획에 관한 기초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의 실현의지가 적은 데다가 기초자치단체는 선언도시가 되는 것을 전후로 남녀공동참획주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해야 하므로 선언에 신중을 기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지방자치의 역사가 50년이 넘는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중시되므로 내각부 등의 남녀공동참획선언도시 장려사업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남녀공동참획선언도시에 대한 내각부의 재정지원은 사업비의 약 20%~25%에 해당하는 100~500만엔 정도에 불과한반면, 남녀공동참획선언도시에 대한 평가나 행정관역는 거의 하지 않는다. 2001년부터는 남녀공동참획사회기본법이 시행・공포된 날을 기념하여 남녀공동참획주간(6월 23일~29일까지)을 개최하여 남녀공동참획사회형성에의 공로자 표창과 남녀공동참획선언도시 관계자 전국회의 개최 기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등의 행사를 실시하였다.

남녀공동참획선언도시들은 남녀주민의 참여와 협력에 의해 각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수립과 행사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남녀공동참획선언도시선언기념식의 개최와 선언문의 채택, 남녀공동참획사업추진의 전담행정부서의 설치 등을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기념비, 현수막을 관청청사에 설치하여 남녀공동참획선언도시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각종 강좌나 포럼 등을 개설하여 여성의 다양한 사회참여를 높히고 남성의 육아, 가족간호 등 가사노동과 가족대화에서의참여를 높히는 등 전통적 성별역할분업의식의 타파를 기조로 한 남녀평등의식을 제고하고 있다.특히 많은 경우 공모에 의해 남녀공동참획추진위원회 위원을 선정하고 응모시민은 위원회 활동계획을 제출하며, 선정된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남녀공동참획계획수립과 남녀공동참획정보지 제작에 참여를 한다. 또한 위원회 참여에 있어 남녀별 비율의 균형을 이루어서 남녀공동참획계획에서 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 남녀주민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일본의 기초자치단체들이 남녀공동참획선언도시가 된 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남녀공동참획의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식견과 남녀공동참획추진 전담부서의 구비와 담당공무원들의 성실한 정책실행추진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평가된다. 남녀공동참획도시를 선언한 효과로서 담당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것은 남녀평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자치단체 전 부서의 관심

과 실현의지는 물론 남녀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높아진 점이다.

B. 노르웨이의 '여성시각을 반영한 마을정비계획'[™]

노르웨이에서는 남녀평등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1989년부터 1992년까지 지역발전계획(코 뮤네(군단위 행정기구) 프로젝트)과 시행에 여성을 적극 참여시켜 주택건설, 교통, 생활환경조성 기타 마을정비 계획 전반에 있어서 여성의 시각을 반영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환경부, 어업부, 공업부, 지방행정노동청, 코뮤네 연합회가 공동으로 참여한 시 범사업으로 국내외의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UN을 비롯한 각종 국제회의에서도 보고되어 호평을 받았다. 이 프로젝트는 노르웨이 전역에서 6개의 코뮤네가 시범적으로 참여하였다. 6개의 코뮤네 는 여성의 입장과 관심에 초점을 맞추고 마을정비계획의 인지도와 실행력을 높히기 위해 총회세 미나둥을 개최하여 계획의 목표, 우선 분야, 계획책정의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집하며 실무 자그룹 등의 연계망으로 조직화하였다. 그러한 방법으로 지역사회(코뮤네)의 계획입안 조직에 여 성의 시점을 포함시키거나 여성을 위한 특별프로그램 내지 가족친화적 프로그램의 도입, 자연환 경의 보호와 문화사업 등을 실시하였다.

노르웨이 환경부는 1999년에 이러한 프로젝트 시행과정에서 얻은 성공적 경험을 다른 지역에 보급시키고 추진할 수 있도록 「코뮤네 정비계획에서의 여성적인 시각-여성의 의견을 반영시킨 코 뮤네의 계획책정」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이 자료의 제1부는 「요리책(cook book)」이라는 여성에게 친근한 제목으로, 마을을 정비하는 계획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여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동하 여 여성의 시각으로 계획의 기획, 결정, 시행하는 것의 중요성과 그 구현방법을 마치 요리책처럼 쉽고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그리하여 풀뿌리 수준의 일반여성이 지자체의 남녀평둥실현정책 참 여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다. 이 자료의 제2부는 「메뉴얼(핸드북),로서 이 계획의 실시를 담당 하는 실무담당자를 위한 안내서로 계획의 기획, 결정, 시행과정에 여성의 시각을 반영하도록 유 도하고 있다.

¹⁰⁾ 정현주·김원총(2000), 「경기도 여성정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pp.16 5~169 ; 박통화·이선우·김애령(2001), '용인시 생산적 복지체계구축을 위한 여성정책개발연구』, pp. 18~20 참조.

C 미국의 '여성들이 살기 좋은 도시'

선정기관 및 선정기준^{¹⁰}

미국 뉴욕에서 발행되는 역성잡지 Ladies' Home Journal (레이디스 홈저널)은 1998년부터 매년 "역성들이 살기 좋은 도시"(The Best Cities for Women)를 선정하고 있다고의 이 선정은 매년 독자들에게 무엇이 지역사회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지에 관한 의견 조사를 하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선정항목을 정하며 항목마다 공식적인 통계를 근거로 선정이 이루어진다.

특히 2000년에는 새로운 밀레니엄의 출발을 기념하기 위해서 미국의 200개의 대도시를 대상으로 현재뿐만 아니라 2020년을 기준으로 한 미래에 초점을 두어 ① 낮은 범죄율 ② 보육시설과제도 ③ 생활스타일(삶의 질, 공기와 물의 청정과 기후패턴 기타 환경, 하루 통근시간, 가계소득과 생활비 등) ③ 직장(일터와 작업장에서의 평등정도, 보수좋고 풍부한 일자리 등) ④ 교육(양질의 공교육 등) ⑤ 보건(역성과 어린이를 위한 의료전문가의 수, 믿을 만한 건강센터구비 등) ⑥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역성공무원의 수와 역성친화적 행정 등) ⑦ 역성편의시설·쇼핑시설 등 ⑥ 역성기업가의 수 ③ 이혼율 ⑩ 역성과 남성의 비율 ⑪ 시민의 투표율과 시민위임업무 기타 다양한 항목을 선정하였다」3 2001년에는 범죄율(Crime), 생활스타일(Lifestyle), 교육시설(schools), 직장(Jobs), 보건(Health Care), 보육(Child Care), 정부(Government)의 7개의 주요한 항목을 가지고 200개 도시 중 미국에서 "역성들이 살기 좋은 도시"의 선정점수가 최상위인 10개 도시와최하위인 10개 도시를 선정하였다」4)

이러한 선정기준에 의해 "여성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된 도시들은 대체로 인구가 45만명 이하이고, 범죄발생비율이 전체 도시 중 낮은 비율 순으로 1/4 이내이며, 대부분 직업과 교육 등

¹¹⁾ Ladies' Home Journal, February 2000, pp.65~72; http://www.ibi.com/default.soh/lbi.class.

¹²⁾ 이 잡지는 이러한 여성친화적 도시평가의 실시로 인해 미국의 전국여성정치단체(National Women's Political Caucus)와 래드콜리프 대학(Radcliffe College)이 수여하는 Britina(Briceptional Merit in Media Award) 상을 수여하였다.

¹³⁾ 이러한 선정기준에 의해 2000년에 여성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된 상위 10개 도시들은 캘리포니아의 Irvine, Thousand Caks, Huntington Beach, 중서부의 Ann Arbor, Madison, Fargo, 남서부의 Plano, Virginia Beach, Alexandria, 동북부의 Stamford 등이다.

¹⁴⁾ ① 역성이 살기 좋은 도시의 선정점수가 최상위 10개 도시(I. Alexandria, VA 2. Ann ArMI 3. Burlington, VT 4. Irvine, CA 5. Madison, WI 6. Plano, TX 7. Sioux Falls, SD 8. Chespeake, VA 9. Overland Park, KS 10. Stamford, CT) ② 역성이 살기 좋은 도시의 선정점수가 최하위 10개 도시 (191 Flint, MI, 192 Bl Monte, CA 193 Chicago, IL 194 San Jose, CA 195 Los Angeles, CA 196 Cleveland, OH 197 San Francisco, CA 198 Oakland, CA 199 New York, NY 200 Salinas, CA)

에서 차별과 여성폭력이 적고, 보육제도의 충실로 가정과 사회활동의 조화로운 양립을 가능케 하며 남녀평등정책이 적극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2 선정도시 **사례⁽⁵⁾**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에 위치한 얼바인시는 2년 현속 미국에서 가장 여성들이 살기 좋은 10대 도시로 선정되었다. 2000년의 조사에서는 낮은 범죄율항목과 보육시설항목에는 각각 상위 4위, 직장항목에는 상위 9위를 기록하였고 그외 교육, 환경, 라이프 스타일, 쇼핑 편의성, 정치, 경제 등 거의 모든 항목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2001년에는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선정에서 종합 4위를 기록했으며 여성기업가비율도 4위를 기록했다. 10 또한 얼바인시는 미연방수사국에 의해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페어런츠(Parents) 잡지 등에 의해 미국에서 자녀양육에가장 적합한 도시로 선정되었다.

일바인시는 1971년에 고용창출·주거환경·쇼핑·교통·교육·녹지유지·위락시설 등 7개 요소를 고려한 마스터플랜을 세워 재탄생한 대표적인 성공적인 계획도시¹⁷이다. 이 도시는 개발과정에서부터 특별히 여성만을 위한 우대정책을 수립한 것은 아니지만, "능력 있고 일하기 원하는 여성, 아이를 안전하게 제대로 키우고 싶은 여성들의 희망을 고려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남녀가 평등하고 가족친화적이며 인종차별이 없어 모든 인간이 살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대표적 시책으로 인근 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시청내에 자녀 양육부서를 설치해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고, 시립·사립 탁아소가 100여개, 개인이 운영하는 놀이방도 170여개에 이르며, 시청내에 설치된 탁아소에서는 2개월된 유아부터 유치원 취학전 아동까지 맡길 수 있으며, 자유로운 장소와 분위기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 또한 얼바인 시청의 국장급 이상에 여성비율이 50%가 넘고, 상공회의소 직원의 70%이상이 여성일 정도로 여성의 정치·관계 진출이 활발하다.

¹⁵⁾ The City of Irvine(2001), 'An Introduction to the City of Irvine.;

http:////www.ibi.com/default.soh/lbi.class.;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104/200104010300.html

¹⁶⁾ 그러나 생활비(Cost of Living)항목에서는 193위를 기록하였다. 회부에 좋은 기후(Good Skin Days)는 141위, 통근시간(Commute Time) 142위, 데이트를 하고 싶은 곳(Dating Prospects)은 64위를 기록하였다(http://www.ihi.com/default.soh/ihi.class?FNC)

¹⁷⁾ 얼바인시는 제임스 얼바인 가문이 대대로 목장을 해오던 121㎢규모의 목초지였으나, 1971년에 얼바인가문 소유의 개발회사인 얼바인 컴퍼니가 개발한 도시로서 기업과 주 택지역을 서로 연결되게 지어 주민의 65%가 15분 정도 걸어서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도시를 설계했다. 현재는 컴퓨터, 통신업제 등 2,200억 기업이 밀집한 첨단 하이테크도시로 불리고 있다. 1975년 31,750명이었던 인구도 2000년에는 144,600명으로 5배로 중가하였다. 시는 인구가 20만명에 달하면 인구유입을 억제할 계획이다.

D.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일본과 노르웨이의 사례는 모두 주민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주민 특히 그동안 정책의사결정에 소외되었던 계층인 여성의 참여를 중대시켜 여성의 시각을 정책의 계획에서부터 반영시켜 지역사회를 남녀평등하고 민주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사례이다. 이러한 정책은 1995년의 북경행동강령이 남녀평등실현의 효과적 방법으로서 제안한 성평등의 주류화(Mainstreaming of Gender Equality)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 실현한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사결정에 사회구성원의 균형있는 참여와 시각반영을 도모하여 참여민주주의의 실현과고객(민간)지향적 행정서비스의 강화를 도모한 것이다.

□ 특히 일본이 '남녀공동참획사회형성'과 '남녀공동참획선언도시장려사업'을 21세기 재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전략으로 추진한 점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남녀주민과 민간조직이 연계, 협력하여 그 실현의지와 분위기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면서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확산, 생활화시키는 사례는 우리나라 정책에 활용할 만한 가치가 크다. 또한 일본이 1994년에 설치된 남녀공동참획추진본부는 종전의 부인문제기획추진본부를 폐지하고 강화한 것이며, 1997년에 내각관방장관이 남녀공동 참획담당장관으로 임명되기 전에는 여성문제담당장관이었으며, 총리부가 매년 발간하는 「여성백서」도 1997년에 '남녀공동참획백서」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부서도 명칭을 남녀공동참획추진과로 변경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명칭변경은 남녀공동참획사회실현정책이 여성만의 권익을 위하거나 여성을 대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기획과 정에서부터 남녀가 공동참여하여 남녀 모두와 지역사회전체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남성,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조직 전반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점은 우리나라 여성정책담당부서도 주목해야 할 점이라고 볼 수 있다.8)

¹⁸⁾ 반면, LA시는 상설 여성정책후진부서인 여성지위위원회(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를 두고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문제해결에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도 예산과 인력의 부족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를 요구하는 여성시민들의 정책요구에 제대로 부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더구나 Ladies Home Journal이 선정한 다양한 항목 중 어느 한 항목에도 "여성들이 살기 좋은 도시"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으며, 2001년 조사에서는 200개 도시 중 195위를 차지할 만큼 "여성들이 살기 좋은 도시"의 다시 먼 실정에 있다. 이와 같이 LA시가 여성친화적 정책의 효과를 충분히 발취하지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LA시가 인구가 300백만이 넘는 대도시인데다 유색이민자들이 많고 범죄율도 높은 지역적 특성을 가지는 점 외에 여성지위위원회 부위원장이 직접 진술한 바와 같이, 여성친화적 정책의 필요성이나 수요가 크고 그 정책도 남녀평등실현에 궁극적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지방자치단계장이나 남성공무원들, 시외회 나아가 시민 전체의 관심이나 참여를 유도하지

□ 미국의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는 여성만이 살기 좋은 도시라는 의미는 아니며 남녀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의미하되,특히 지역사회의 삶의 결과 환경을 여성의 생활편의를 중시하여 평가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선정사업은 정책사례는 아니지만 민간여성잡지사(Ladjes Home Journal)에 의한 이러한 평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과 시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성부와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하거 나 언론기관 또는 여성단체가 주관기관이 되어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마을)' 또는 '남녀평등한 도시(마을)'를 선정하는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크다고 본다.

Ⅲ. 우리나라의 '남녀평등도시(마을)만들기'정책방안

A. '남녀평등도시(마을)'의 정의

남녀평등이란 성별에 의해 능력이나 역할을 고정화시키는 의식과 제도를 변화시키고, 성을 이 유로 하는 불합리한 차별과 폭력을 철폐하여, 가정과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가 동둥하게 참 여, 협력하며 그 개성과 능력을 자유롭고 동둥하게 발취하게 함으로써, 남녀 모두의 인권보장과 삶의 길 및 복지를 향상시키는 한편, 가정과 지역사회, 국가 기타 모든 사회조직의 민주화와 발 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남녀평둥도시(마을)'는 이러한 의미의 남녀평둥이 구현되는 지역사회로서 가정과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가 동둥하게 참여하고 상호의 인권이 존중되며 남녀평둥하고 민주적인 지역사회를 의미한다.

'남녀평둥도시(마을)만들기'는 지방자치단체와 남녀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를 남녀평둥도시 (마을)로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의 의식과 제도, 시설, 환경을 변화시켜 나가는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B. '남녀평등도시(마을)만들기'의 기본요건

지역사회를 '남녀평등도시(마을)'로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1) 지방자치단체의 남녀평등실현

못하고 남성들이 여성지위위원회의 공무원이나 위원으로 일하는 것을 꺼려하는 상황에도 기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관련 법령과 정책의 시행 2) 「21세기 남녀평등헌장」의 생활화와 「지방자치단체 세계여성선언문」의 이행노력 3) 지역실정에 맞는 남녀평등도시(마을)만들기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4)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실현의지와 선언 5) 행정추진체제와 행정문화의 조성 6) 주민과 민간조직의참여와 협력 7) 중앙여성정책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같은 7가지의 기본요건이 필요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남녀평등실현 관련 법령과 정책의 시행

(1) 여성발전기본법

이 범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①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제5조). ② 여성부가 수립한 여성정 책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제8조 제1항) ③ 소속위원회에의 여성위원의 참여확대를 위한 연도별 목표수립과 시행(법 제15조 제1항, 시행령 제27조) ④ 여성의 정치참여확대 지원(제15조 제2항) 여성의 공직참여확대 여건조성(제16조) ⑤ 고용평등의 실현(제17조) ⑥ 모성보호(제18조) ① 교육평등의 실현과 남녀평등의식제고교육의 실시(제19조~제21조) ⑥ 여성복지증진(제22조) ⑨ 영유아보육지원과 방과후 아동의 보호시책의 강구(제23조) ⑩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의 확립과 맞벌이 부부, 편부모 가정 등에 대한 지원책의 강구(제24조) ⑪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방지와 피해자보호(제25조) ⑩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의 정당한 평가와 법제도 ·시책에의 반영(제26조) ⑩ 여성의 국제회의참여확대와 평화중진운동 및 국제협력강화를 위한 활동지원, 여성관련국제조약의 이행(제27조) ⑩ 대중매체의 성차별적 내용의 개선과 대중매체를 통한 남녀평등의식의 확산(제28조) ⑭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지원(제34조) ⑪ 여성단체의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예산적 지원(제32조 1항) ⑯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와 예산지원(제33조)과 같은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남녀차별금지및구재에관한법률

이 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제3조), 교육(제4조),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제5조), 법과 정책의 집행(제6조)에 있어서의 남녀차별과 성희롱(제7조)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매년 1회 이상의 성희롱예방교육의 실시와 피해자보호조치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지침).

(3) 남녀고용평등법

이 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중진시키고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을 지원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을 저해하는 모든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제4조, 제16조).

(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이 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건 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5) 가정폭력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이 범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개인이 가정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건전한 가정과 가족제도를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3조). 또한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및 기타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제공 4) 가정폭력의 실태 조사 5)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 및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제4조 제1항)과 이에 필요한 예산상의 지원조치(제4조 제2항), 담당기구와 공무원의 배치(제4조 제3항), 가정폭력관련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대한 경비보조등에 의한 육성·지원(제4조 제4항)을 해야 한다.

(B) 윤락행위등방지법

이 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윤락행위의 방지와 요보호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조치 (제4조)와 여성복지상담소설치(제14조)와 여성복지상담원의 배치(제15조)를 하여야 한다.

(7) 모자보건법

이 범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①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 중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의 강구(제3조), ② 보건소 안에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운영(제7조) ③ 모자보건수첩의 발급(제9조) ④ 임산부 및 영유아·미숙아등에 대한 건강관리와 의료지원(제10조), ③ 임산부의 안전분만조치(제11조) ⑥ 필요한 자에 대한 피임시술의 실시와 피임약제의보급(제12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B) 여성부의 여성정책목표와 여성정책기본계획

2001년 1월 29일 수립된 여성부는 여성정책의 목표를 '남녀평등한 민주인권복지국가의 건설'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 갈 여성인력의 양성·활용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여성인적자원의 개발'과 남녀차별적 법·제도 및 관행의 개선과 여성의 권익보장으로 삶의 길을 향상하기 위한 '여성권익보장'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실현하기위하여 '여성정책의 주류화'(여성문제를 국가정책에서 주요과제로 추진,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자율적인 참여를 중진), '여성정책의 생활화'(법제상의 남녀평등을 넘어 의식과 문화속에 정착하는 실결적인 평등정책 추진), '여성정책을 통한 사회통합'(남녀가 함께 발전하는 상생의 정책추진, 일반주부와 소외계층 등 대다수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의 추진)을 추진전략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여성정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여성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계협조와 중앙행정기관, 여성단체 등 NGO와의 협조를 강구하였다.

또한 여성부는 2003년부터 향후 5년간 실시될 여성정책의 기본목표와 실현전략을 제시하는 제 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2002년에 수립하여야 한다. 이 계획이 수립되면 다른 중앙행정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그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광역지방자 자치단체에게 다음 연도의 소관 여성관련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2. 「21세기 남녀평등헌장」의 생활화와 「지방자치단체 세계여성선언문」의 이행노력

(1) [21세기 남녀평등헌장]의 생활화

여성부는 설립이래 처음으로 주관하는 '여성주간' 행사에서 「21세기 남녀평등헌장」을 선포하였다. 이 현장은 21세기의 시대적 사명이 가정과 직장, 사회와 국가의 모든 부문에서 여성과 남성이 조화로운 동반자 관계를 이루는 일이며 우리는 '차별이 사라진 평등한 사회,' '폭력이 없는 평화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사회'를 지향하며 이를 위해 여성들 스스로가 자기 삶의 당당한 주체가 되어 사회 발전의 주역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을 천명하고 이에 다음과 같은 남녀평등사회로 가는 행동지표를 제시하고 그 실천을 촉구하였다.

- (1) 남녀는 가정 안에서 역할과 책임을 공유한다. 특히 자녀양육은 남녀 모두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남녀가 평등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다양한 가족형태를 존중한다.
- (2)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사회적인 기여로 인정되고, 마땅히 보호 받는다.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 (3) 남녀는 능력에 따라 동둥하게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이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여성은

- (4) 남녀는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동둥하게 행사한다. 정치와 공공 부문에 여성이 참여하는 기회를 늘리며,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 (5) 남녀는 동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갖는다. 남녀의 역할에 대한 고정 관념을 없애도록 교과 내용을 개선하고, 지식정보 사회를 맞아 여성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 성한다.
- (6) 남녀는 평등하고 민주적인 문화를 가꾸어 나간다. 이를 위해, 가정과 직장, 대중매체 등 모든 영역에서 민주적이고 남녀 평등한 의식과 관행을 확립하도록 노력한다. 여성을 향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
- (7) 남녀는 환경보존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남녀평등 사회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국제적인 현대를 강화한다.

(2) 「지방자치단체 세계여성선언문」의 이행노력

지방자치단체 국제현맹이 채택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여성에 관한 세계선언문」은 남녀평등과 여성인권의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역할과 국가 및 국제사회의 지원에 관해 규정 하였다.

이 선언문이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하는 역할로 강조한 것은 성평등의 주류화(mainstreaming of gender equality)를 실천하는 것이다. 즉 이 선언문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과 남성 모두의 필요를 충족시키려면, 정책의 수립과 시행, 평가 등 모든 단계에서, 여성이 남성과 대등하게 참여하고 그 경험과 관점을 반영시킬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남녀의 대등한 정책의사결정에의 통합 없이는 민주주의와 정책의 효율성과 길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또한 이 선언문은 여성인권의 보장에 관해서는 시민으로서의 여성과 남성은 참정권, 환경적으로 건전한 생활조건·주택·상수도· 위생시설·공공 교통수단의 향유권, 토지소유권, 여성의 생식권리(모성보호권)와 모든 형태의 가정폭력, 육체적·정신적·성적인 폭력 및 학대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근로권,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의 향유·개발·관리·감시에 관한 권리 등 모든 인권을 동등하게 보유하고 행사할 권리를 가지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외 이 선언문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교육제도에서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및 행정적 구조내에서 인식 제고 노력을 통해 남녀평둥과 관련된 태도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이 선언문의 목표

20 여성연구

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평등체계 및 조직, 단체, 민간부문, 비정부단체, 전문단체, 여성단체, 연구소, 노동조합 등 각종 사회주체들과 활발하게 공조할 것을 천명하였다.

3. 지역실점에 맞는 남녀평등도시(마을)만들기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지역사회가 남녀평등도시(마을)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현행 남녀평등실현 관련 법령과 정책을 시행하고 「21세기 남녀평등헌장」을 생활화할 수 있는 구체적 추진계획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 정에 맞게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4.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실현의지와 선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체제와 문화, 정책과 환경, 시설을 남녀평등하게 변화시키고 남녀평등도시 (마을) 실현계획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가 지역사회를 남녀평등도시(마을)로 만들려는 실현의지가 매우 중요하며 그 실현의지를 널리 선포하는 선언절차도 필요하다.

5.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추진체제와 행정문화의 조성.

지방자치단체가 '남녀평둥도시(마을) 만들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1) 전담행정부서의 구비와 적정한 예산, 인원확보 (2) 남녀평둥정책의 핵심정책과제로의 부각 (3) 남녀평둥정책시행에서의 타부서의 참여독려와 모든 공무원 대상의 정책제안제도의 실시 (4) 남녀평둥상황관련 성별분리통계작성 (5) 남녀평둥정책의 적극적·다양한 홍보 (6) 남녀공무원에 대한 인권관계 법령 및남녀평둥의식고취를 위한 교육의 실시 (7) 남녀공무원간의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의 방지와 상호존중과 협력분위기 고취 (8) 모든 정책의사결정 및 시행에서의 여성의 참여중대와 성인지적 관점의 반영 (9)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와 남녀공무원에 대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양립지원 둥이필요하다

B. 주민과 민간조직의 참여와 협력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과 민간조직이 지방자치단체가 '남녀평둥도시(마을) 만들기'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참여, 협력하는 것은 그 정책의 민주성과 효율성, 관심도를 높히고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의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계획마련시 지역주민, 민간조직의 참 여와 행정과의 협력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이루기 위해 어느 한 성이 적어도 40% 미만이 안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7. 중앙여성정책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지방자치단체의 '남녀평둥도시(마을) 만들기' 정책추진에는 중앙의 여성정책부처와의 정책연계 와 상호협력이 요구된다. 특히 여성부가 수립한 '남녀평등한 민주인권복지국가'의 여성정책의 목 표와 여성정책기본계획이 구체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남녀평둥도시(마을) 만 들기' 정책추진의 지원과 상호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행정자치부 여성정책담당관실은 여성공무 원의 지위향상과 함께 공직사회의 남녀평둥의식과 문화를 확산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지 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지원 및 여성정책 추진사항 평가를 소관사항으로 하고 있으므로 '남녀평 등도시(마을) 만들기' 정책추진에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 여성정책담당관실의 정책연계와 협 력도 요구된다.

C. '남녀평등도시(마을)만들기' 정책추진방안

1. 정책의 추진목적과 기대효과

- (1) 21세기 국제화·지식정보화·민주주의와 인권의 보편화·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사회 를 남녀평등하게 변화시키고 있는 국제추세를 반영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사회의 의식 과 제도, 시설, 환경을 변화시켜 가정과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가 동둥하게 참여하고 상호의 인권이 존중되며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지역사회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 (2)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생활에 가장 근접한 정부조직이자 서비스 제공자, 생활환경조성자, 고 용주로서 남녀평둥실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며, 여기에 주민과 민간조직이 참여, 협력하도록 한다.
- (3) 현행 남녀평등관련 법령과 정책계획, 「21세기 남녀평등헌장」, 북경행동강령과 「지방자치단 체에서의 여성에 관한 세계선언문」 등에의 관심과 이행분위기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전 국에 확산시키고 생활화 한다.

2. 정책의 주관기관과 시행기관·협력기관

- (1) '남녀평등도시(마을)만들기'정책의 주관기관은 여성부와 행정자치부 여성정책담당관실로 한다.
- (2) 이 정책의 시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중 기초자치단체로 한다. 그 이유는 광역자치단체는 시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시책을 거의 하지 않고 또한 그 관할 지역이 광대하여 남 녀평둥도시(마을)만들기 사업을 직접 시행하기가 곤란한 반면,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보다 시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그 장이 민선자치장이므로 시행기관으로서 적절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남녀공동참획도시, 노르웨이의 코뮤네, 미국의 '여성들이살기 좋은 도시'도 우리나라의 시·군·구에 해당하는 기초자치단체이다.
- (3) 이 정책의 협력기관은 여성부와 행정자치부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제외한 다른 중앙여성정책 부처와 광역자치단체로 한다. 광역자치단체는 남녀평등도시를 선언하는 기초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에 많이 나오도록 장려하고 선언도시에 대해 중앙부처와 공동으로 지원금을 교부하고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이 필요하다.

3. 정책의 추진방법

- (1) 정책의 주관기관(여성부와 행정자치부 여성정책담당관실)은 민·관합동의 남녀평등도시(마을)만들기 정책추진단을 구성한다. 이 정책추진단에는 전문가와 여성·시민단체대표, 기업대표, 언론사대표, 다른 중앙여성정책부처 관계자 들을 포함시킨다. 추진단은 남녀평등도시(마을)의 기준과 정책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주관기관은 2002년 6월 13일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당선된 민선자치단체장에게 정책설명회 개최 등의 방법에 의해 정책추진방안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한다. 동시에 여성·시민단체와 언론과 공조하여 정책추진에관해 홍보한다.
- (2) 정책의 시행기관(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는 남녀평등도시(마을) 만들기 추진부서를 설치하고 남녀평등한 행정추진체제와 행정문화를 조성하며 남녀주민의 참여와 협력 및 중 왕여성정책부처와의 연계강화에 의해 지역실정에 맞는 남녀평등도시(마을)만들기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남녀평등실현 관련 법령과 정책의 시행과 「21세기 남녀평등헌장」의 생활화와 「지방자치단체 세계여성선언문」등의 이행을 통해 지역사회를 남녀평등도시(마을)로 만들겠다는 취지의 의지를표명한다. 남녀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남녀평등도시(마을) 만들기 추진단을 구성하되, 단원구성시 연령별, 성별 분포의 균형을 도모

- (3) 광역자치단체는 소관 기초자치단체들과 협의회를 개최하여 기초자치단체들이 남녀평등도시 (마을) 정책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행정적 지원을 한다.
- (4) 정책의 주관기관과 정책추진단은 남녀평둥도시(마을) 만들기 선언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과 시행 및 주민의 참여와 협력 상황을 심의하여 행정적, 예산상의 지원과 포상을 하고 홍보를 널리한다. 또한 일본등의 외국의 선진 남녀평둥도시(마을)과 우리나라의 남녀평둥도시(마을)간의 교류를 도모한다.

참고문헌

김엘림·주재현(2001), "여성부출범과 여성정책·행정체제의 과제," 「정부개혁과 행정학연구」(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김엘림·김혜영(2001), 「남녀평등도시모델개발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박통희·이선우·김애령(2001), 「용인시 생산적 복지체계구축을 위한 여성정책개발연구」, 이화 여자대학교

정현주·김원홍(2000), 「경기도 여성정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전국 시·도 여성정책연수단(2001), 「남녀평둥도시 모델개발을 위한 선진도시(일본, 미국) 연수결과 보고서」

Margot Gilman (2000), "The Best Cities for Women," Ladies' Home Journal, February 2000

24 여성연구

Sophie Watson(1999), "City A/ Gender," Engendering Social Policy, Open University Press.

The City of Irvine(2001), 'An Introduction to the City of Irvine-

http://japan.hanmir.com/jtk.cgi?url

http://www.lhi.com/default.soh/lhi.class

http://www.cityofla.org/csw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104/200104010300.html